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영향평가기관·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의 범위 확대 》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73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77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52조의6) ...	3

I.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77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18.

다. 회 부 일 : 2024. 10.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음.

또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성능 및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공사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재만을 품질 인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7년 2월 4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2021년 12월 21일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어 건축

물의 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 및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요 건축물의 안전 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52조의6 개정).

3. 검토의견

가.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52조의6)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생략)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 ⑦ (생략)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생략) ② ----- ----- ----- <u>공공기관</u> 또는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u>으로서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 또는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설립된 <u>연구기관</u>-----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건축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¹⁾은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등²⁾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제52조의6제1항³⁾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성능 및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2)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16층 이상&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건축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현행 「건축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⁴⁾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⁵⁾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축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대상 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 역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4) 안전영향평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여 23개 기관이 지정해제되고 3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는 등 총 327개 기관(전년 대비 20개 감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추가적으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률상 근거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⁶⁾의 정의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법 제8조제1항⁷⁾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타 입법례⁸⁾ 등을 고려하여,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삭제 <2024. 1. 26.>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삭제 <2024. 1. 26.>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거 규정을 ‘제2조’에서 ‘제8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2조의6제1항의 문구를 안 제13조의2제2항의 문구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생략)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 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생략) ② ----- ----- <u>공공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u>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생략) ② ----- ----- <u>공공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u> -----.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u> ----- -----.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u>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현황 】

구 분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2호)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3호)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포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4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5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관계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

문 의 처

02)6788-5585

참고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자료: 국토교통부]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16층 이상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평가기관)**^{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

* (지정기관, '21.12)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검토항목)** ^{구조}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구조안전성, 풍동 실험의 적정성, 지반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 적정성, 인접대지 안전성 등

- **최근 3년간 평가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안전영향평가	국토안전관리원 (3건)	국토안전관리원 (4건)	국토안전관리원 (1건)
	건설기술연구원 (4건)	건설기술연구원 (2건)	건설기술연구원 (1건)
	토지주택공사 (0건)	토지주택공사 (0건)	토지주택공사 (0건)
	한국부동산원 (8건)	한국부동산원 (5건)	한국부동산원 (3건)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 **(내용)** 주요 건축자재 등^{*}의 성능확인 및 제조공장 점검을 통해 적합자재만 인정하고, 생산·유통·시공全过程를 인정기관이 관리

* 「건축법」 제52조의5에 따른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내화구조 등

- **(인정기관)**^{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함

* 「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참고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설립일자	1983.6.11.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설립목적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국가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국토재해 대응 기술, 친환경 국토조성 기술, 건설기반 융합 기술, 고성능 건설자재 기술 연구개발 ○ 건설, 국토 기술 정책 수립, 건설분야 국가표준 및 기준 개발, 기술사업화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 건설공사 및 기자재 품질인증, 인·지정, 검사 및 시험, 평가, 인증						
최근 대표적 연구성과	○ DNA 기반 노후 교량구조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및 활용기술 개발 - 500만건 이상의 노후화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최적화 기술, 미래 예측 기반 교량 노후도 평가 정확도(90% 이상) 향상 기술 개발 -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 주거단지 음식물쓰레기 이용 발전소 규모의 청정 연료 생산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저탄소·고발열량 청정연료 생산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플랜트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개발 및 청정연료 실 발전시설 적용성 평가 ○ Tech-lead형 액상화 피해 예측 가시화 시스템 및 고효율/저비용 액상화 보강공법 개발 - 지중구조물 피해 예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3차원 액상화 위험지도 개발 및 세계 최고수준의 고해상도 액상화 위험지도 구축 기술 개발 - 전세계 유일의 국토지반정보 DB와 액상화 위험지도를 연동하여 자동 갱신 - 구조물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액상화 위험지반을 효율적으로 보강이 가능한 고효율 저비용 보강공법 개발(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15% 이상 절감) ○ 우주건설 환경 모사 및 우주기지 건설 기초원천 기술 개발 - 현지자원활용 마이크로파 소결 블록(10cm급) 제조 및 진공 마이크로파 소결 기술 - GPS 음영지역의 1 lux 이하 저조도 환경에서 정확도 1m 급의 고정밀 3차원 지형 모델 구축을 위한 무인 지형 정보화 기술 개발 - 저전력(40.5 W), 경량(8.7 kg), 소형화(0.2 m3), 시추심도(1 m), 14 MPa 급 우주용 시추장비 개발						
조직/인력 (‘24.11.14.)	조직규모		정규인력 전체 인력현황(명)				
	2부원장, 13본부, 3연구소, 1위원회, 1부, 1스쿨, 8센터, 21실, 1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무기직	합계
		524	37	65	45	22	671
		연구직 인력현황(명)					
		박사		석사이하		계	
	390	134		390			
수지총괄 (사업계획 및 예산) *이월금 제외	수 입(백만원)			지 출(백만원)			
	항목	’23예산	’24예산	항목	’23예산	’24예산	
	○ 정부출연금	69,782	60,320	○ 인건비	57,937	59,378	
	○ 자체수입 등	119,507	103,109	○ 연구직접비	119,098	92,081	
	○ 대체조정	-	-	○ 경상운영비	8,215	8,431	
				○ 시설비	1,039	1,039	
				○ 기타	3,000	2,500	
계	189,289	163,429	계	189,289	163,429		